

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10. 11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. 9. 27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4. 9. 30.

다. 상정일자: 제271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24. 10. 11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문화예술과장 차민철】

가. 제안이유

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육성을 위하여 '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'를 설치·운영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2) 윈드오케스트라 구성 및 운영(안 제3조~제4조)
- 3) 지휘자 및 단원의 자격 및 위·해촉(안 제5조~제8조)
- 4) 수탁자 의무 및 지도·감독 등(안 제9조~제12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권하나)

가. 제정 목적

- 동 조례 제정안은 2024년 9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, 주요 내용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육성을 위하여 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’를 설치·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조문 검토

- 본 제정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본칙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, 윈드오케스트라 구성 및 운영(안 제3조 및 제4조), 단장의 직무(안 제5조), 자격 및 모집, 위촉과 해촉(안 제6조~제8조), 수탁자의 의무 및 지도·감독(안 제9조~제10조), 위탁의 취소(안 제11조), 경비의 지원(안 제12조) 등을 규정함.

〈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〉

조(제목)	내용
제1조(목적), 제2조(기능)	- 목적: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마포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육성 - 기능: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, 구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생활 제공 등
제3조(구성), 제4조(운영)	- 단장, 지휘자, 단원 등 구성하여 50인 이내 정원에 관한 사항 -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, 마포문화재단 위탁 등에 관한 사항
제5조(단장의 직무)	- 사무 총괄, 지휘자 및 단원의 지휘·감독에 관한 사항
제6조(자격 및 모집)	- 지휘자, 단원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
제7조(위촉), 제8조(해촉)	- 지휘자, 단원의 위촉 기간(2년) 및 연임 등에 관한 사항 - 구청장이 지휘자 및 단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항 등
제9조(수탁자의 의무)	- 수탁자의 운영 종합계획 수립·제출, 실적·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
제10조(지도·감독)	- 구청장의 지도 및 감독, 이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
제11조(위탁의 취소)	- 의무 위반 등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
제12조(경비의 지원)	- 무보수 원칙, 필요한 경비 및 사례비 지급에 관한 사항
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의하였고,

- 안 제3조는 윈드오케스트라¹⁾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단장, 지휘자, 단원 등 구성하고, 50인 이내 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음.
- 안 제4조는 윈드오케스트라운영에 관한 사항으로, 안 제4조제2항에서 마포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음.
 - 이는 현재 마포구립 합창단, 문화예술 단체 지원 등의 실질적 운영을 마포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마포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임.
- 안 제6조는 지휘자 및 단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,
 - 지휘자는 “음악분야 전공한 사람 중”으로 전문성을 강조한 사항으로 지휘자의 자격에 대하여는 전공자 선발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오케스트라의 자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 - 단원은 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음악 및 악기에 재능 있는 사람으로 참여의 폭을 넓혔음.
- 안 제7조 및 제8조는 지휘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·연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.
 - 지휘자, 단원의 임기를 “2년”으로 정하고,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둔 점은 오케스트라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-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, 지도·감독, 위탁의 취소,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음.

1) 윈드오케스트라: 오케스트라에서 관악기로 이루어진 섹션을 지칭하는 용어. 혹은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관악기 자체를 지칭할 때도 사용한다.

다. 종합 검토 결과

- 이와 같이 검토한 바, 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윈드오케스트라 운영 및 위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(시책과 권장) 취지에 부합²⁾하며,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음.
- 아울러, 동 조례 제정을 통해 마포구민에게 오케스트라에 대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연주활동 기회 제공, 문화·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

2) 제5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붙임 1**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**

구분	조례명	기관명	제·개정	시행일자
1	곡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	전라남도 곡성군	제정	2020. 7. 2.
2	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	부산광역시 영도구	일부개정	2023. 1. 1.
3	부산광역시 중구 실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	부산광역시 중구	제정	2023. 12. 8.
4	서울특별시 구로구립 꿈의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	서울특별시 구로구	일부개정	2023. 12. 28.
5	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시니어팝소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	서울특별시 구로구	일부개정	2023. 6. 15.
6	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	서울특별시 구로구	일부개정	2023. 12. 28.
7	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	서울특별시 동대문구	일부개정	2023. 4. 13.
8	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	충청북도 음성군	제정	2019. 5. 7.
9	홍성군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	충청남도 홍성군	일부개정	2021. 12. 30.
10	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	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	일부개정	2024. 5. 7.

■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제3조(시책과 권장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(施策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
제15조의3(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·사회적·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